

#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미국 주요 대학의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배대식

충북대학교

오늘날 대학은 변화와 개방, 경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의 축소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학캠퍼스에는 사회적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인 인적자원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일으키는 지식정보·기술자원, 그리고 첨단장비를 비롯한 물질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대학 캠퍼스는 첨단화, 복잡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제 자원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위협성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비가시적인 위협,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unexperienced) 위협,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unknown) 신종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통합안전관리 범규의 부재와 안전관리 실행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전문화된 서비스 제도의 부재현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결국 불만족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대학 생활 안전 위기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모든 자원(인적자원, 물질자원, 지식정보자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주제어:** 대학 생활안전 체계, 대학 위기관리 서비스, 캠퍼스 안전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기

오늘날 교육체계의 정점에 있는 대학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기반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급격한 국제환경 변화는 글로벌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지식창출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겸비한 인재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캠퍼스 생활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의 현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생활수준과 지식·정보의 격차는 학생들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의 단절과 왜곡현상을 야기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소외감, 박탈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의 결과는 음주문제, 약물남용, 인터넷게임 중독과 같은 비정상적 탈출구를 찾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만일 대학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대학에 내재하고 있는 위협요소를 대학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학은 사고발생시 인적, 물질 자원 등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의 버지니아공대(Virginia Tech) 총기 사고<sup>1)</sup>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의 문

1)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제를 대학이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인명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고는 미국의 총기소지 정책과 사고야기자의 정신질환 문제, 대학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부적절, 미국문화 부적응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최초 사고발생 후 초기 대응과정에서 상황오판과 낙장대처로 인하여 2차 재난으로 확대된 인적 재난으로 드러났다. 1차 총격 발생 후 약 2시간 동안 버지니아 대학당국의 위기대응체계는 혼란상태에 빠져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인명피해를 키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 우리의 대학 현실은 총기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요인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불감증과 구태의연한 부작위적 행태로 인하여 대학을 생활안전 위기관리의 성역에 위치한 것처럼 오관함으로써 생활안전 위기관리의 맹점(blind spot)에 방치하고 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폭발사고 등 실험실 안전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당시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2005년 3월 31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과학기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수행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과 관련하여 근거법으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실’로 한정함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단지,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 것은 과학기술부의 연구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시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근거법률이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학의 안전관리정책과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있어서 ‘안전 관리’ 또는 ‘시설물 관리’ 정도의 수준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왔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

공대(Virginia Tech)에서 발생하였던 총기 사고는 1명의 학생이 약 2시간동안에 32명의 생명을 유린하였으며 29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하고 자신도 자살로 막을 내림으로써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캠퍼스 재난이었으며, 캠퍼스 위기관리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학생은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이며 수요자로서 대학으로부터 안전을 부여받을 권리, 즉 안전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권을 지키는 데는 대학에 내재된 위험요소와 산재한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분석한 후, 학생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생활안전 위기관리시스템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 2. 연구의 목적

대학은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의 창출과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활에 있어서 대학캠퍼스는 다양한 실험·실습과 동아리활동 등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서 최적의 안전환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복해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로 인한 대학구성원의 피해와 시설물 등의 손실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서비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현행 대학의 생활안전 위기관리업무 추진과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찾고, 둘째,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 참여 중심의 위기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며, 셋째,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 안전관리정책이 시설물 관리 또는 안전사고 관리중심으로 집행되어왔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대학 생활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관점에서 대학 캠퍼스의 생활안전(living safety)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과 대학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례 분석을 통한 교훈과 대응방안을 탐구하고, 미국 대학의 캠퍼스 위기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국민소득 증가와 소득격차, 정보격차 등 양극화 요인에 의한 각종 신종범죄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생활안전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의 소득과 경제력 격차, 지식과 정보의 격차, 문화적 생활격차 등 양극화요인이 많은 갈등과 범죄를 비롯한 극단적 사회부조화현상을 초래하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는 경제 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심화됨에 따라 더불어 사회문제로서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위화감 확산, 사회전반에 걸친 실업문제 등 취업 난의 심화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불안감 등 정서장애와 정신질환, 폭력적 쾌락문화, 자기중심주의, 집단주의적 사회병리현상으로 인하여 무동기범죄나 반달리즘(vandalism)<sup>2)</sup>적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도 대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위험상황으로부터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이 취업을 위한 경쟁에 몰입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이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여유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sup>3)</sup>.

2) 반달리즘(Vandalism)은 “고의 또는 무지에 의하여 도시의 문화·예술이나 공공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를 뜻하며, 5세기 초 유럽의 민족대이동 때 아프리카에 왕국을 세운 반달족이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로마에 걸쳐 광포한 약탈과 파괴를 거듭했던 데서 유래되었으며,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서 약탈과 살인, 공공시설의 파괴·방화 등의 도시범죄가 급증하는 세태에 대하여 반달리즘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달리즘의 유형에 대하여 마틴(Martin, 1961)은 청소년의 반달리즘을 중심으로 약탈적(predatory), 보복적인(vindictive), 이유가 없는(wanton) 반달리즘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학자 콘헨(Cohen, 1973)은 획득적(acquisitive), 전술적(tactical), 관념적(ideological), 보복적(vindictive), 놀이적(play), 악의적(malicious) 반달리즘 등 6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Wise, 1982).

3) 김태윤 외(2006)는 “작은 사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거나, 예방될 수 있었던 유사한 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재난화 및 재난의 확대·재생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난화 특성인 “사전징후의 무시, 사건의 은폐·조작·왜곡, 책임논쟁 현상들”이 재난을 확대·재생산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한다. 반면에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에 대해 노진철(2008)은 “위험에 대한 민감성 증대는 개인이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는 능동적 태도보다는 국가의 위험관리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의 위험관리에 의존한 결과 개인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캠퍼스에 내재한 어떤 위험요소를 발견하더라도 방관자<sup>4)</sup>가 되는 것은 단지 불편해서라기 보다는 위험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하거나 위험상황의 신고에 대한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대학당국의 안전관리교육의 부실과 안전관리 서비스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아 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연구실 뿐만 아니라 실험실, 강의실, 기숙사 등 캠퍼스 전체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유발요인에 의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근래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연구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에서도 연구실과 실험실의 시설물의 관리에 관련된 법규를 적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의 복잡한 법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법규 집행보다는 오히려 다중규제로 인한 불편과 오류가 발생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산재한 안전관련 법규를 조망하여 분석하고 새롭게 대학안전을 총괄할 수 있도록 법제방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입법미비와 행정부작위로 인한 형식적인 안전관리업무 관행을 일거에 혁신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지금까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연구와 대책은 주로 초·중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래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연구실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아직 대학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대학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물적, 지식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적,

4) 방관자효과(Bystander Effect) 또는 제노비스신드롬(Genoveese Syndrome), 대중적 무관심, 구경꾼 효과라고도 한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제도적 요인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법제와 체계, 서비스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에 내재된 위험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의 기대와 평가를 반영하여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대학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 안전관리 영역 중에서 대학의 생활안전 위기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 주요 대학의 캠퍼스안전관리 정책과 관련 법규, 홈페이지 자료를 연구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2000년도 이후 안전관리 법제도와 국가의 안전관리정책을 중심으로 대학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적용되는 각종 안전관련 법규와 국가의 교육분야 안전관리정책과 안전관리집행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발생한 안전관리 사고는 아직 통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실험실 사고 자료 외에는 객관적으로 노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2007년도 이후 미국의 총기사고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근래 충격적인 캠퍼스 사고였던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관리 실패의 교훈의 탐색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하였던 대학들이 사고발생 후 캠퍼스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위험정보 수집 및 위험정보 방법, 위기관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대학의 인적, 물적, 지식정보자원의 안전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시설물관리 중심에서 생활안전 체계로 발전시키고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위기관리 관점에서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법제도 구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첫째, 대학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원과 위험요소, 안전관리 취약부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둘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간이 될 수 있는 생활안전 중심의 법제도 정비 및 구축 방안을 수요자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사례로서 미국의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고 사례와 미국 대학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캠퍼스 위기관리시스템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위기관리정책의 대안을 탐구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안전 및 위기관리 실패사례는 교육시설방재연구원, 소방방재청, 통계청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법제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실제 생활안전 위기관리업무의 실효성과 위기발생시의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대학 생활 생활안전 위기관리의 이론적 배경

### 1. 안전 및 위험의 정의

#### 1) 안전의 개념

안전과 위험의 개념은 주관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생활영역과 인간 욕구의 한계가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세계화, 우주화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용어의 개념정의도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장국(2007)은 안전의 정의를 재해의 개념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예상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 주의하고 대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 안전인 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피해의 규모가 큰 것이 재해”라고 하고 있다(이장국, 2007: 31).

외국의 안전관리 문헌에서 안전(safety)에 대한 정의

를 찾아보면, Pierre Maurice, et. al.(2001)는 safety를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손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과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Daniel Dorman, et. al.(2005)는 safety는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피해(damage) 또는 파괴로부터 사람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Security는 반달리즘(vandalism), 범죄 행위 또는 테러공격에 의해 유발되는 의도적인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사람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안위를 지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영역에서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복지국가 수준의 활용가능한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정책 개발을 위한 접근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安全)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Safety와 Security의 범주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근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표 1> “Safety” 대 “Security” 적용 비교

영문 표기	Safety	Security
개념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피해(damage)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의 보호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나 상황에 의한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을 보호
판단기준 (사고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의도적(unintentional)</li> <li>우연적(accidental)</li> <li>자연적인(natural) 행위 또는 상황(circumstanc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도적(intentional)</li> <li>고의적·계획적(deliberate)</li> <li>악의적(malicious) 행위 또는 상황</li> </ul>
적용대상 및 범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발적 사고(accidental events)</li> <li>차량 안전(vehicle safety)</li> <li>작업장 위험</li> <li>신체적·심리적·사회적·물질적 위해(危害)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러(terrorist threat or attack)</li> <li>탈취(hijacking)</li> <li>반달리즘(vandalism)</li> <li>범죄활동(criminal activity)</li> <li>불법행위(illegal act) 등</li> </ul>

자료: 이장국(2007), SCAG<sup>5)</sup> 인용 및 내용 추가 정리.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Safety’는 「우연한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해, 손실 또는 사망의 발

5)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과 McCormick Taylor Inc.(2006)의 자료를 보면, Safety와 Security를 구별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인과 인간적 요인(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Safety는 우발성, 자연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요인과 결합시키며, Security는 고의성, 의도적인 사건으로부터 사람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http://www.scag.ca.gov/sein/).

생이나 위협의 감소에 대비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닌 행동 또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유로운 상태이자, 수용할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Security’란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또는 계획적인 행동으로부터 위협과 손실에 대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즉 「의도적인 행동이나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안전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무분별한 혼용보다는 ‘Safety’를 「안전」 또는 「안전성」으로, ‘Security’를 「보안」이나 「안보」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2) 위협의 개념

안전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위험(risk)은 사전적으로는 손실 또는 상해의 가능성(possibility of loss or injury) 또는 위험(성)을 뜻한다. 위험(危險)은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고, 위험성(危險性)은 위험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장국(2007)은 위험이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되는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뜻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여 대비하고 예방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최대한 줄이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최대한 작게 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한다(이장국, 2007: 30).

김두현 외(2002)는 위험성(Risk)의 정의를 재해발생 정도를 추정하는 용어로서, 위험성은 재해를 일으킬 개연성(probability)과 재해의 결과로 예상되는 피해정도(severity)의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김두현 외, 2002: 302).

Schneiderbauer & Ehrlich(2004)는 Risk를 “일정한 위험요소로부터 특정한 시기동안에 위태(peril) 또는 위험상태의 일정한 구성요소(element)까지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기대 손실 또는 유해한 결과의 가망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위험이란 사람과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제 권익에 반하는 사고를 일으킬 가능

성(probability)과 어떤 범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끼칠 것인가라는 손실의 심각성(severity), 얼마나 안전한 상황을 위협할 것인가라는 취약성(vulnerability)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협성의 증가는 안전성이 감소하게 되는 상관관계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요소를 예측하거나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 2.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의 개념

### 1)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의 개념

최근의 연구에서 생활안전(生活安全)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는 상태”(이재은, 2007: 4)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두경자·윤용희, 2006: 76; 신현정·신동주, 2007: 277)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이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신현정·신동주, 2007: 277)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개념들을 종합 정리하면, ‘국민생활안전’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국민 각자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대학이나 문헌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위기의 개념을 보면, Rivier College는 “위기”란 본질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정상적 운용을 계속하는 대학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중단시키는 어떤 조건 또는 상황이며, 그것은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내에 대학이 정상적 운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이고 역동적인 행동을 요구한다(Zdziarski, 2007: 28)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Virginia Tech의 학생사무국(Division of Student Affairs)에서는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기의 개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위기는 다음 상황을 포함한다. 1. 학생의 사망, 2. 학생의 생명을 위협하

는 중대한 상해나 질병, 3. 부모 또는 새로운 보고자가 이미 또는 당장 관련되어 있는 상황, 4. 대기하고 있는 직원 구성원들에 대하여 학생처장에 의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 5. 분명한 정상적 한계가 없는 비상사태”이다(Zdziarski, 2007: 29).

다음으로, Zdziarski(2007)는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하여 “위기란 대개 갑작스럽게 또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으로써 교육시설의 정상적 운용이나 교육적 사명을 붕괴시키며, 그리고 인명, 자산, 재원의 안녕(well-being)이나 교육기관의 평판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Zdziarski, 2006: 5; 2007: 27-28).

위와 같은 개념들을 종합 정리하면, 위기(crisis)는 안전한 상태에서부터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고 위험한 상태로의 급격한 변화가 임박한 시기으로써 결정적 단계, 중대 국면의 기로를 뜻하며, 이는 안전관리나 재난관리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과 역량이 동원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대학 생활안전 위기’란 대학의 사명과 제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 문화자원 등)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 또는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란 대학캠퍼스에서 대학의 목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대학구성원 및 대학조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관리차원의 통합적 관리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대학 생활 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 (1)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의 개념

안전관리서비스를 사전적 개념으로 정의해 보면 개인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보안 서비스, security 산업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인력경비를 비롯해 시스템경비, 무인자동화 시스템, CCTV<sup>6)</sup>, 절도방지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

기존 경비체계는 경비원 등 인력에 의한 순찰과 경계 활동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이와는 달리 오늘날의 안전

6) CCTV는 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첨단 하이테크 기기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범, 수사 등 경찰행정 및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선 범죄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동균·박성수, 2005).

관리서비스는 첨단 전자장비를 통한 시스템구축과 전국적인 통신망 운영 등을 이용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보안경비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서비스는 인구집중에 의한 도시화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인력의 부족과 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수요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민간경비회사와의 용역계약 또는 공공기관의 자체 인력과 CCTV 등 보안설비체제로 운영하고 있다<sup>7)</sup>.

위기관리서비스란 위기관리 사건으로부터 야기되는 조직의 잠재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조직에 대한 공공 신뢰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AIGnet Advantage, 2006: 1).

위와 같은 내용을 비교추론하여 생활안전 위기관리서비스의 개념을 정리하면, 안전관리서비스는 국가의 인적, 물적, 지식정보자원 등 제 자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여 잠재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고도로 훈련된 전문인력과 전문지식, 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경계활동을 수행하고, 사고발생시에는 대응매뉴얼을 토대로 위기관리단계별 대응조치와 수단을 제공하는 일련의 위기관리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 Virginia주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자료를 보면, “학교 위기관리는 위기를 확인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하여, 균형을 회복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한된 시간과, 문제중심의 개입에 더욱 주의깊게 초점을 두는 학교안전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의 정의를 근간으로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의 개념을 조작화하여 정의하면,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란 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소비자중심의 생활안전 위기관리시스템에 의해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복구활동을 통해 대학의 인적·물적·지식정보 자원을 보호하고, 교육연구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기적인 안전관리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의 범위

대학의 안전관리 서비스는 대학에서 안전사고와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실험실 사고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 절도 등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안전관리대책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보건진료 및 건강상담, 학생적성검사, 취업 및 진로상담, 방법 및 화재예방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및 CCTV시스템 운영, 실험실내 소화기 비치,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연구원 및 연구조원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스쿨버스 운행, 학생순찰제, 실험실 준수사항 부착, 연구실종사자 보험가입 등의 기본적인 생활안전 위기관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생활안전 위기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안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심하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캠퍼스에 각종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순찰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캠퍼스내 위험정보를 공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생활안전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미흡하며, 또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예산에 맞추어서 단기적인 안전관리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7) CCTV는 범죄자로 추정되는 자의 감시 및 증거확보가 용이하며,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하여 경찰인력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력경비시 항상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데, CCTV와 같은 기계경비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가능하며, 인건비의 부담도 줄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기계경비 시스템은 범죄자의 범행기회를 축소시켜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박동균, 2006).

고 최소한의 안전 관리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산집행상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도 안전업무를 중요치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업무로 판단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안전을 소홀히 다루는 결과로 초래되는 인명의 손실과 피해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예산중심의 정책집행 관행에서 탈피하여 필수적인 재난 및 안전 관리계획과 전략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 3. 선행연구 검토

#### 1) 생활안전 위기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중등학교 중심의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처럼 학교안전관리 접근에 있어서 대학영역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대학이 지성인 집단으로써 합리적이고 완벽한 이성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용자의 부주의, 조작미숙, 기계장치의 결함, 고장, 서비스 공급자인 행정 조직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부적절 등의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화학약품 폭발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해왔지만, 실제 노출된 것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험실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대학의 일반 교육시설과 공간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폭력, 성폭행, 절도, 자살, 음주<sup>8)</sup>, 약물남용 등 사고가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행위로 간주하여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는 것이 대학의 명예와 학생을 보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즉 대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 사고 및 범죄행동이 사회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대학의 평판을 떨어뜨리며, 오히려 대학 홍보의 역효과를 우려

8) 대학생들의 과음과 폭음은 음주 후 성문제, 경제적 피해, 사고, 학업 지장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대학사회에서 형성된 잘못된 음주문화와 음주습관은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문화를 지속화시키고 각종 음주폐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방형애 외, 2008).

해서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태는 대학이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안전한 성역인 것처럼 오도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캠퍼스에서 어떻게 위험성을 판단하고 수용하며, 그리고 학생들간에 위험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사고와 범죄 등에 의한 재난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생활안전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대학의 생활안전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기 위해서 위험의 수용에 대한 위험인식이론과 소비자만족이론으로서 기대불일치모델을 적용하여, 소비자중심의 생활안전 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대학캠퍼스에 잠재된 위험요인의 인식에 있어서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학생들간에 차이가 발생하며, 그리고 서비스 만족 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대학분야의 교육서비스에 관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들을 조사하였다.

#### 2) 생활안전 위기관리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검토

소비자중심의 생활안전 위기관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국민생활 안전 위기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이재은 외, 2007; 유현정, 2008)을 검토하였다.

<표 2> 국민생활안전위기 분야 선행연구 과제

연구자 (발표월)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주요 내용
유현정 (2008년 4월)	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 요소 관리 전략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개념의 도입 및 "취약 계층"을 정의함</li> <li>소비자안전법(가칭) 제정 제안 및 제조물책임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등 제시</li> <li>공공재로서 생활안전위기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기술 및 서비스 질 평가 방법론으로 기대불일치 패러다임과 공정성 패러다임의 비교</li> </ul>

<표 2> 국민생활안전위기 분야 선행연구 과제(계속)

연구자 (발표월)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주요 내용
이재은 외 1명 (2007년 12월)	국가위기 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전략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생활안전 책임주체(개인, 사회)와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영향범위(협소범위, 중·광범위)를 기준으로 국민생활안전 위기영역을 네 가지 영역(11개 하위영역)으로 분류 및 체계화함</li> <li>• 국민생활안전 위기관리법 제정 및 국민생활안전정보센터 설립 등 국민생활안전정책 추진 전략 제시</li> <li>• 국민생활안전 영역 중 식·의약품, 교통, 학교안전 등에 대한 운영방안으로서 연구결과 제시</li> </ul>

지금까지 생활안전에 관한 주제를 다룬 논문은 2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험인식과 고객만족에 대한 문헌을 참고로 소비자관점에서 접근하였다.

### III.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실태 분석

#### 1. 우리나라의 대학 안전관리서비스 실태 분석

##### 1) 연구실 안전 중심의 안전관리 서비스

우리나라는 아직 대학에 잠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전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이 미미한 실정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도 의무적으로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근래 대학별로 캠퍼스 폴리스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명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학의 안전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대학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은 찾아보기 어렵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 따라 대부분 과학기술분야중심의 연구실 및 실험실 안전관리 정책 수준에서 대학 실험실(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제공, 홍보포스터 게시, 보험가입, 실험실 방역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캠퍼스내에서 치안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각 사안별로 절도, 폭행, 방화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과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경비체계, CCTV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개인적 인권침해를 이유로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대상시설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대학의 사고 발생 현황과 문제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교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실험실 화재사고와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불가피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고는 감추고 내부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관행 속에 사고를 은폐하면서 사고원인도 함께 묻히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위험요소를 더욱 배양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사고의 고리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학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할 정도의 사고나 재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야할 수준의 큰 범죄사건에 한정되어 있다<sup>10)</sup>.

9) 위기학습의 부재로 인하여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향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위기관리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이 신장되지 못함으로써 유사한 재난이 이어지는 ‘위기관리 실패의 반복’을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 조직이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동태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위기관리 구축 전략으로서의 시스템적 사고는 조직의 구성원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시스템 구성요소간의 동태적이고 복잡한 상호 의존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박동균, 2006).

10) 근래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경북 ○○대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귀가하던 학생이 문지마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사례로 “A씨는 2007년 11월 16일 오전 2시쯤 경북 ○○대학교 기숙사 앞길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이 학교 4학년 B(23.여)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흥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 11. 20). 또한 전북 ○○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길을 가던 여대생에게 접근해 “사진모델이 돼 달라”며 빈 강의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대학교 3학년 A(23)씨에 대해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 26일 오후 5시쯤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교정에서 길 가던 같은 학교 3학년 여대생 B(21)씨에게 “인물사진을 찍어 리포트로 제출할 모델이 필요하다”며 B씨를 빈 강의실로 유인해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자총격기를 보여주며 B씨를 위협했고, 자신의 디지털 카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언론매체에 의해 드러난 사고를 중심으로 대학캠퍼스의 교육 및 연구공간에서 발생하였던 인적 재난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피해관련 시설물관리자나 관련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책임과 사회적 비난이 뒤따르고, 대외적 평판이 떨어지며 대학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 때문에 사고를 은폐하거나, 또는 사고가 언론에 노출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하거나 축소발표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사고라 할지라도 대부분 재산피해는 미미하며, 사고원인도 대부분 시설물의 노후화, 전기누전, 원인미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관행화되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나 공제회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그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된다.

<표 3> 대학내 실험실 화재발생 현황

사고일자	사고 기관(장소)	사고 내용	인명 피해
2007.02.14	서울대 신공학관 미세공학연구실	누전화재 추정	인명피해 없음
2007.02.01	서울대 생명과학관 생물학실험실	화학약품 폐액분리중 염산추정 가스 폭발	부상 2명
2007.09.30	동국대학교 과학관 지하1층 실험실	누전화재 추정	인명피해 없음
2008.02.13	서울대 자연과학대 동위원소지구화학 실험실	화학약품 공기정화기 과열 화재	인명피해 없음
2008.05.16	숭실대학교 과학관 1층 실험실	화학물 합성실험중 화재	1명 부상
2008.07.08	경북대학교 공대9호 관 고분자공학실험실	화학약품보관선반 발화 추정	인명피해 없음

자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http://www.edufa.or.kr>), 연합뉴스 자료 (2007년 이후) 정리.

이러한 이유로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표 3>과 같이 대부분 연구실 및 실험실 사고 등 시설물에서 발생

메라를 이용해 B씨의 나체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전북 CBS 보도자료, 2007. 6. 5). 이와 같이 대학 캠퍼스에서 절도, 폭력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의 명예손상을 우려해서 자체로 수습하려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고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학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지 못하게 되고, 미봉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사사건이 재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실험실에서만 사고가 발생되고 위험성이 있는 공간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연구실이나 시설관리와 관련된 사고 자료는 부분적으로나마 자료가 노출되어 있지만, 대학에서 발생하는 폭행, 음주사고, 절도, 폭력, 사이버범죄, 약물남용 및 마약류사고, 성폭력, 시설물 훼손 등의 사고는 실질적으로 은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의 실상으로 인해 앞으로 유사한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사고은폐나 은닉행위가 고의든 아니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을 일소해야만 한다.

특히, 대학에서의 폭력과 성폭행 사고가 보도되지 않음으로써 대학캠퍼스가 폭력과 성범죄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성역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가장 방치하고 있는 것이 대학생의 음주와 흡연문화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개인적인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음주나 흡연을 한 상태에서 교육연구활동이나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연수활동 등 단체활동 시에 발생하는 폭력사고나 사망사고가 대부분 음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이며, 대학 시설물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나 폭발사고가 담뱃불 사고나 음주 후 전기안전 부주의에 의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와 흡연행위에 대한 예방교육서비스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개인적인 위험요소는 더욱 노출시키지 않고 은폐한 채 교육시설이나 환경적 요소로만 사고원인을 전가시키게 된다면, 당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보호할 수 있지만, 결국 유사

11)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를 개인적 책임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사회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실정이며, 또한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조차 문제인식 수준이 낮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감소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방형애 외, 2008). 대학생들의 과음과 음주에 의해 발생하는 폐해는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살, 성폭행, 소란, 익사사고, 추락사고, 기물파괴 등의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음주를 하는 대학생, 술을 마시지 않는 대학생은 물론 그들의 가족, 교직원,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사회 전체의 보건의문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김광기 외, 2006).

한 행태가 반복됨으로써 더욱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학을 둘러싼 대학주변의 환경은 우리나라의 단면이자 유흥상가의 축소판으로 상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시설 내에서는 일부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유해업소나 범죄유발공간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우범지대와 인접하게 되면서 위험성이 대학내부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대처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러한 각종 강력범죄사고에 비해 대학의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연구기자재 및 집기 등의 손실로 인한 재정적 문제가 부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요소는 다양한 치안사고가 캠퍼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학생과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고는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 위험성이 은폐되고 잠복됨으로써 새로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 2. 미국의 캠퍼스 안전관리서비스 실태 분석

### 1) 종합적인 캠퍼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변화

미국에서는 대학 연구실과 실험실의 위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1990년 이후 부터 법률로 제정하여 관리하였다.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법(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의 한 항목으로 실험실에서의 위험한 화학물질 노출 기준(CFR 1910.1450 Occupational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in Laboratories)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실험실의 보건안전 프로그램의 근거법이 되었다.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초점을 두어 안전관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대학의 양적 팽창은 대학사회에도 그동안 연구실 안전사고와는 다른 양상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각종 범죄문제가 대학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단순한 안전사고 관리차원

으로는 대학 안전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으며, 결국 성폭행, 폭력, 절도, 교통사고, 약물남용사고, 음주사고 등과 같은 대학캠퍼스의 범죄양상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재난에 의한 대학의 인적,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관리에서 종합적인 캠퍼스 안전관리체제, 즉 안전한 캠퍼스(Safe Campus)<sup>12)</sup> 구현을 위해 위기관리시스템으로 초점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처럼 위기관리로의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Lehigh 대학 신입생 Jeanne Ahn Clery가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피살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러한 대학의 범죄를 예방하고 캠퍼스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범죄통계자료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주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1990년 11월 8일에 제정된 “학생 알권리 및 캠퍼스 안전법(Student Right-To-Know and Campus Security Act)”으로 구체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 다문화사회의 격차, 팽배한 개인주의문화, 환경의 파괴 등에서 파생되는 복합적인 사회적 병리현상과 각종 범죄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대학에서 총기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위기관리차원에서 정보수집체계를 개발하고, 위험경보 서비스 및 각종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 미국 대학 캠퍼스내 주요 총기사고 현황

미국의 대학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보다 총기사고가 사회문제로 상존해왔으며, 다음으로, 성폭행, 폭행, 강도, 살인, 음주, 마약류 등의 치안사고가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미국의 많은 학교 총기 사건 중에서

12) 안전한 캠퍼스(Safe Campus)의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학생들에게 물리적 또는 정서적 웰빙(well-being)에 대한 차별, 위협이나 협박이 없는 환경에서 그들의 학문적 잠재력을 추구할 기회 제공, 둘째, 그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협에 대한 대응 및 핵심적인 교정 조치 제공, 셋째, 안전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다양한 차원에서 일상적인 환경 평가 및 적절한 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James A. Rund, 2002).

언론에 보도되었던 자료 중 2007년 이후의 총기사건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표 4> 2007년 이후 미국 학교 총기사건

년월일	학교(대학) 총기사고명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07.01.03	헨리 포스고등학교 총기사고 (Henry Foss High School shooting)	1	0
2007.04.16	버지니아텍 대량학살 (Virginia Tech massacre)	33	23
2007.09.21	델리웨어주립대 총기사고 (Delaware State University shooting)	1	1
2007.10.10	석세스텍 고등학교 총기사고 (SuccessTech Academy shooting)	1	5
2008.02.08	루이지애나공대 총기사고 (Louisiana Technical College shooting)	3	19
2008.02.11	미첼고등학교총기사고 (Mitchell High School shooting)	0	1
2008.02.12	E.O. Green중학교 총기사고 (E.O. Green School shooting)	1	0
2008.02.14	노던 일리노이대 총기사고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shooting)	6	18
2008.08.21	센트럴 고등학교 총기사고 (Central High School shooting)	1	0

자료: 구글(<http://www.google.com>) 웹(web) 사이트의 '총기사고(school shooting incident)' 검색 및 연합뉴스(2008. 2. 15) 자료 추가 정리.

미국의 국가적 배경이 다인종, 다문화로 형성되어 있고, 소득 격차와 더불어 언어소통 문제에 수반되는 커뮤니케이션 격차에 의해 사회적 갈등과 각종 범죄가 발생하며, 대학도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공간이 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인종차별적인 문화가 잔존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은 다양성속에 내재적인 위험성이 매우 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모방범죄를 유발하는 폭력게임, 사이버공간과 현실과의 혼돈이 유발되는 사이버 중독과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정신적으로 미아가 되고 고립됨에 따라 폭력, 총기사고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인 1명이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즉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많은 학생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 구진됨으

로써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총기를 규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공건물의 출입시에 금속탐지기를 통해 불법 무기의 소지를 통제하는 것이 미국의 대학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정신질환이나 음주, 마약 등에 의한 각종 범죄요소와 결합되어 사건이 발생될 때에는 커다란 파장을 낳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IV. 미국 주요 대학의 위기관리 체계 및 서비스 비교

### 1. 미국의 대학캠퍼스 안전관리 법체계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홈페이지 자료(<http://www.ed.gov/index.jhtml>)에 따르면 캠퍼스의 안전(Campus Security and Safety)은 고등교육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부모, 교직원들이 학교안전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유지하고 배울 수 있는 국가차원의 안전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1990년의 범죄 인식과 캠퍼스안전법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미국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이 이 법을 잘 순응하도록 해야 할 확실한 책임을 맡고 있고,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 법의 집행에 우선권(priority)을 두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대학에서 발생한 범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알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Jeanne Clery 캠퍼스 안전정책 및 캠퍼스 범죄통계 정보공개법(Jeanne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and Campus Crime Statistics Act)은 처음에는 캠퍼스안전법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전역에 걸친 단과대학 및 대학교의 캠퍼스와 캠퍼스 주변에서 범죄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획기적인 연방법이다. 이 클러리 법(Clery Act)<sup>13)</sup>은 모든 대학들이 각 대

13) Clery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대학들은 캠퍼스 안전정책과 3년간 선정된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둘째, 학교는 학생과 직원들에게 진행중인 위협을 내포하는 범죄에 관해 캠퍼스 지역사회에 적시

학 캠퍼스나 주변에서 범죄 정보를 유지하고 공개하도록 연방정부 재정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이 법의 순응여부는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 2. 미국 주요 대학의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비교

본 연구에서 미국 대학의 위기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조사에서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5개 대학의 위기관리체계는 <표 5>과 같이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관리서비스 정보의 량과 서비스의 편의성은 총기사고 경험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미국 주요 대학 홈페이지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체계 비교**

구분	버지니아 공대	노던일리 노이대학	델라웨어 대학	루이지애나공대	볼주립 대학
법제	클러리법(Clerly Act) 적용 - 캠퍼스 안전정책 및 3년간의 범죄통계 정보 매년 공시 - 캠퍼스커뮤니티에 위험상황 적시 경보 - 경찰 또는 보안부서를 갖고 있는 각 교육기관은 범죄 기록 유지 - 미국 교육부는 범죄통계를 중점적으로 수집 전파 - 클러리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교육에서 벌금 처분				
안전 관리 체계	위기관리 시스템 (Emergency Management) 대학경찰 (Virginia Tech Police)	안전관리 시스템 (Safety & Security) 대학경찰 (Campus Police)	안전관리 시스템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 시스템 (Safety Management)	위기관리 시스템 (Emergency Management) 대학경찰 (University Police)
소비자 중심 안전 관리 서비스	안전정보 제공 (Safety Tips)	캠퍼스 안전정보 (Safety Tips)	안전 코너 (Safety Corner)	안전 서식 제공 (Safety Forms)	소비자 정보 (Consumer Information) 등 종합적인 안전정보제공

에 경보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 또는 보안부서를 갖고 있는 각 교육기관은 공적인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넷째, 미국 교육부 범죄통계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전파한다. 다섯째, 캠퍼스 성폭력 피해자는 특별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여섯째, 이 법에 순응하지 않는 학교는 교육부에 의해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20 USC 1092(f)로 성문화된 클러리법은 1995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의 한 부분으로서 대학들이 캠퍼스 범죄와 안전 정책에 대해 반드시 적시에, 그리고 해마다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법이다. 연학생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등과 정후의 고등교육 관련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은 모두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되거나 또는 미국 교육부에 의해 2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교대상이 된 버지니아공과대학(Virginia Tech), 노던일리노이대(Northern Illinois University), 델라웨어 주립대(Delaware State University), 루이지애나공대(Louisiana Technical College), 볼주립대학교(Ball State University) 중 루이지애나 공대의 홈페이지가 가장 단순하고 안전관리서비스 제공 수준이 열악하였으며, 볼주립대학의 홈페이지는 이용자중심의 편의성과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대학의 위기관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측면에서 미국 대학들은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는 법제는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시행하고 있는 클러리법(Clerly Act)이며, 모든 대학이 동 법에 의하여 범죄정보를 공표하고 있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미국대학의 안전관리 실행체계를 비교한 결과는 대학캠퍼스 안전관리 업무 추진의 기본 틀(frame)을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 또는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적극적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아직도 안전관리시스템(Safety & Security System)을 구축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셋째, 안전관리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안전관리영역을 위기관리체계로 접근하고 있는 대학은 대학경찰체(campus police) 운영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하여 안전관리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안전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의 교훈으로 학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신속히 위기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안전관리의 초점을 두고 경보시스템인 “Notification System” 또는 “Alert System”을 구축하고 있으며, 상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대학 캠퍼스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V.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

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통합 안전관리 법규(legislation)의 부재와 안전관리 실행체계(execution system)로서 갖추어야 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전문화된 서비스 제도의 부재현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결국 불만족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1.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의 법제 방안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화를 위한 전략적인 법제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학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보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과 안전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생활안전 위기관리법을 제정해야 하며, 둘째, 단순히 그동안처럼 시설물 관리차원의 안전관리가 아니라 극단적인 최악의 위험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차원의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법제화하여야 하며, 셋째, 생활안전 위기관리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재난예방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넷째, 소비자의 참여를 통한 현장 정보의 공유, 자율적 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2.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실행체계 구축 방안

다음으로, 소비자중심의 위기관리 실행체계의 구축 전략으로서, 첫째, 캠퍼스내의 위험성과 재난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대학캠퍼스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재난 및 사고 정보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및 정보, 그리고 안전지식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표함으로써 스스로 대학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생활안전 위기관리서비스 정책 개발과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생활안전 위기관리정책과 서비스개발에 최대한 반영하고, 넷째,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학습공간이자 멘토링(mentoring) 공간으로 사이버 안전 커뮤니티(Cyber Safety & Security Community)를 구축하여 안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조직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가 필요할 때 실제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생활안전관리팀 신설) 및 전문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중심의 전문화된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내외의 대학에서 발생한 각종 위기관리 실패사례를 학습하여 새로운 위험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과 조직의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 3.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의 실효성 확보 방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서비스 확보방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학캠퍼스공간의 환경안전설계(CPTED) 및 안전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스쿨존(School Zone)내 차량 제한속도 시설 및 차량통행 제한구역 지정, DMS(Digital Media Street)<sup>14)</sup> 조성을 통한 교통 및 조명 등 캠퍼스공간의 디지털정보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둘째, 비상경보 및 조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위기관리단계별로 현장 상황에 따른 집행매뉴얼을 작성하여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넷째, 대학생활의 잠재위험요소별, 교육 및 연구활동별, 그리고 교내외 행사별 위험 상황에 따라 안전 확보에 적합한 세부적인 안전서비스 개발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규 교육과정에 생활안전 교과목을 신설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안전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체득화하여야 한다.<sup>15)</sup>

14)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거리 일명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DMS)는 DMC(Digital Media City)를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생산 및 개발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DMC 중심가로에 조성되는 유비쿼터스 가로이다. DMS는 디지털 기술과 도시환경이 융합되는 공간으로 그동안 건물의 내부에 숨겨져 있던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들을 가로에 전시, 설치함으로써 거리를 방문하고 거리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환경개선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박성수, 2006).

15) Richard Liu & Loren Jung(1980)은 교외통근 학생과 학생만족(The commuter student and student satisfaction)에 대한 연구

여섯째,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소비자인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이 캠퍼스에 안심하고 생활하며, 교육·연구활동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최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안전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 VI. 결론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대학 생활안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로서 통합생활안전 위기관리법 제정과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 재난 및 안전교육훈련의 내실화, 자율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의 생활안전 위기관리서비스 개발과 관련 예산의 확충 등이 필요하며, 또한 그동안 연구실생활안전 위기관리 중심의 시설물생활안전 위기관리 틀을 혁파하여 대학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과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전환점(turning point)이라고 판단된다.

대학의 생활안전 위기관리서비스 소비자인 구성원과 대학주변 관계자, 재난대응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 구축으로 현장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생활안전 위기관리의 일원으로서 대학조직의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문화를 대학주변과 구성원의 가정, 지역사회로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가 미국 대학의 총기사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장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작은 사고가 큰 재난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며, 사고발

생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평소 위험 정보 수집체계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않은 위험요인일지라도 단지 1회의 사고만으로도 많은 인명과 자산에 대하여 폭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재난화할 수 있으며, 특히 유학생이나 외국인과 연루된 사고는 국제적인 갈등과 외교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철저한 물리적 조치와 더불어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앞에서 제기한 신중 위험요인과 잠재적인 범죄요인의 유입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학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인의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은 어떤 사고나 재난으로부터도 예외적인 영역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적, 물적, 지식정보자원 등이 집중됨에 따라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대학은 다양한 신중 위험요소를 연구하고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개발하여 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확산시키는 교육 및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광가·장승욱·제갈정. 2006. 대학교의 환경적 특성이 음주폐해에 미친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3): 65-83.
- ▷ 김미라·황덕순. 2006. 대학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 모델 구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17-31.
- ▷ 김영평·소영진·최병선·정익재. 1995.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29(3): 935-956.
- ▷ 김종의·서정희. 2005. 대학교육서비스의 고객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38: 39-57.
- ▷ 김태윤. 2003. 국가 재해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와 기능. 서울행정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5-128.
- ▷ 김태윤·여차민. 2006. 재난관리이론의 관점에서 본 실패론의 함의. 한국행정연구. 2006 여름호: 245-272.
- ▷ 노진철. 2008.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43-82.
- ▷ 두경자·윤용희. 2006.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75-86.
- ▷ 류경남·박정임·박태주·최민규·이정학. 2005. 대학의 실패실 안전보안관리체계 구축이 안전보안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

를 통해 교육적 이익(educational benefit)에 대한 인식이 학생 만족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여기에서 교육적 이익은 인본주의적 이익(humanistic benefits),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인간 관계(human relations), 그리고 직업교육 이익(vocational benefits)을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학생 만족(student satisfaction)을 학생들이 그들의 대학 생활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extent)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 경보건학회지, 31(5): 365-371.
- ▷ 박동균. 2004. 위기관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분석. 한국행정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4-387.
- ▷ 박동균. 2006. 캠퍼스 범죄피해 및 예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3(1): 19-33.
- ▷ 박동균. 2006.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대학 캠퍼스에서의 활용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395-412.
- ▷ 박동균·박성수. 200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용방안 연구: Y대학교 원룸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7(2): 1-23.
- ▷ 박철현. 2001. 대학의 특성과 캠퍼스범죄피해. 피해자학연구, 9(2): 125-157.
- ▷ 박희제. 2004. 위험인식의 다면성과 위험갈등: 위험인식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가 위험정보소통체계에 주는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8-40.
- ▷ 방형애·임국환. 2008. 대학생의 응주·흡연 예방교육 및 규제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도 조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9(1): 143-156.
- ▷ 배대식. 2008. "위기관리관점에서 대학의 안전관리 법적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4): 183-196.
- ▷ 배대식. 2009. 대학 캠퍼스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배철호·박동균. 2005. 민간경비 종사자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IV): 253-276.
- ▷ 신현정·신동주. 2007. 생활 안전에 대한 유아의 지식, 행동, 위험요소 예측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7(6): 273-293.
- ▷ 양기근. 2003. 위기대응 과정단계별 조직학습.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27-946.
- ▷ 양기근. 2004.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 연구. 한국행정학보, 38(6): 47-70.
- ▷ 유현정. 2008. 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제2차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논문집: 51-73.
- ▷ 유현정·이재은·노진철·김경훈. 2008.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의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5): 224-236.
- ▷ 이재은. 2006.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9-35.
- ▷ 이재은. 2008. 위기관리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3): 239-272.
- ▷ 이재은·김경훈. 2005.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내의 정보공유 영향요인 분석. 서울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한국정책과학학회 2005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25.
- ▷ 이재은·김경훈. 2007.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의 정보공유 영향요인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17(1): 155-185.
- ▷ 이재은·김경훈·김은정·이호동. 2004.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비교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4(1): 73-108.
- ▷ 이재은·김경훈·류상일. 2005.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와 재난관리 시스템 발전 전략. 현대사회와 행정, 15(3): 53-83.
- ▷ 이재은·양기근. 2004.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14(3): 53-81.
- ▷ 이재은·유현정. 2007.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한국위기관리논집, 3(2): 1-17.
- ▷ 이재은·유현정·안철현·정병윤. 2007.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17(3): 277-299.
- ▷ 임재화. 2004. 대학교육의 서비스 품질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36: 303-324.
- ▷ 장정아. 2006. PBL 문제 개발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열린교육연구, 14(1): 65-92.
- ▷ 차용진. 2006. 위험인식 연구: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81-201.
- ▷ 하규만·안지영. 2007. 미국의 국가재난관리체제와 한국에 주는 함의.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상): 311-326.
- ▷ Adamson, Austin D. and Gretchen G. Peacock. 2007. Crisis Response in the Public Schools: A Survey School Psychologist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44(8): 749-764.
- ▷ Liu, and Mark Olsson. 2008.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and Their Non-College-Attending Peers. *Arch Gen Psychiatry*, 65(12): 1429-1437.
- ▷ Elliott, Dominic, Kim Harris and Steve Baron. 2005. Crisis Management and Services Marketing.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9(5): 336-345.
- ▷ James, Archer, Jr. 1992. Campus in Crisis: Coping with Fear and Panic Related to Serial Murd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Sep-Oct, 71: 96-100.
- ▷ Nickerson, Amanda B. and Elizabeth J. Zhe. 2004. Cri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 Survey of School Psychologis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1(7): 777-788.
- ▷ Pierre, Maurice, Michel Lavoie, Lucie Laflamme, and Leif Svanström. Claude Romer, Ragnar Anderson. 2001. Safety and Safety Promotion: Definitions for Operational Develop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8(4): 237-240.
- ▷ <http://cms.bsu.edu/>(볼스테이트대학)
- ▷ <http://region2.ltc.edu/>(루이지애나공대)
- ▷ <http://www.desu.edu/>(델라웨어대학)
- ▷ <http://www.ed.gov/index.jhtml>(미국 교육부)
- ▷ <http://www.edufa.or.kr/>(교육시설재난공제회)
- ▷ <http://www.google.com>(구글)
- ▷ <http://www.klaw.go.kr>(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 ▷ <http://www.mest.go.kr/>(교육과학기술부)
- ▷ <http://www.mndaily.com>(미네소타 데일리 신문)
- ▷ <http://www.moe.go.kr/main.jsp?idx=0403010101>(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분야)
- ▷ <http://www.mopas.go.kr/>(행정안전부)

- ▷ <http://www.niu.edu/index.shtml>(노던일리노이대)
- ▷ <http://www.police.go.kr/infodata/index.jsp>(경찰청)
-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대법원)
- ▷ <http://www.securityoncampus.org/congress/cleryhistory.html>(캠퍼스보안 Inc)
- ▷ <http://www.vt.edu/>(버지니아공대)

---

**裴大植:** 충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대학 캠퍼스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연구, 2009), 현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위기관리관점에서 대학의 안전관리 법 제 방안(2008)” 등이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로는 학교안전, 위기관리 등이다(dsbae55@chungbuk.ac.kr).

접수번호: #090509-01

접수일자: 2009. 05. 09.

심사완료: 2009. 05. 28.